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853

제출년월일 : 2004. 10. 7.
제 출 자 : 정호용위원 외 4인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221번지)외 1,517인으로 부터 제정청구된 조례로 기 제출된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개선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조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사항(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안 제2조)
○ 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사항 삭제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
○ 우수 농·수·축산물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정판매업자의 신청·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급식학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 2)

3.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중 "재료사용및지원"을 "식품비지원"으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지역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중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를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비"라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안 제4조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를 "학교급식법 제4조"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사용)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로 하고, 동조제4호중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 식재료"를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방법, 지정 판매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2항중 "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항제1호중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관계관"을 "학무과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추천한 2인"을 "추천한 의원 2인"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2인"을 "1인"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수·축산인단체 3인

안 제7조제3항중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을 "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운영"을 "위원회운영"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 제8조중 "다음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기타 군수"를 "군수"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9조제1항중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우수 농산물"을 "우수 농·수·축산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급식학교의 의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되,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식품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의 장은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 사용 보고내역을 검토하여 식품비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고성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식품비지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성군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생활개선과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 · 수 ·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지역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품질이 우수한 농 · 수 ·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명시된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 · 수 · 축산물" 이라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 · 수 ·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정판매업자" 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 결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 ---------- ----------. 2. ----------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 3. ---------- ---------- -----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 --------.

제 정 안	수 정 안
4. “지원대상자” 라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 · 중 · 고등학교를 말한다.	<삭제>
5. (생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신설>	5. “식품비” 라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 가공 ·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①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 · 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국내와 지역생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 · 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 · 중 · 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학교급식법 제4조 ----------.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성관내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5조(우수 농 · 수 · 축산물사용)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 · 수 · 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②군수는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군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식재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3.(생략)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 6.(생략)	제6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 1. - 3.(제정안과 같음)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 5. - 6.(제정안과 같음)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방법, 지정 판매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②위원회 ----------.

제 정 안	수 정 안
1.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 ---------- ------
2. 고성교육청 관계관	2. --------- 학무과장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2인	3. ---------- 추천한 의원 2인
4. - 6.(생략)	4. - 6.(제정안과 같음)
7. 농어업인단체 2인	7. 농 · 수 · 축산인단체 3인
8. - 9.(생략)	8. - 9.(제정안과 같음)
10.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10. ---------- --- 1인
③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위원장 ---------- ----------.
④지원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⑤---위원회운영 ---------- --------.
제8조(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판매업자의 신청) ---------- ---------- 다음 각호의 사항 -- ----------.
1. - 3.(생략)	1. - 3.(제정안과 같음)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4. 군수----------
<신설>	5. 기타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지정판매업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 ----------.
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농산물 공급내역을 매월말 기준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수 농·수·축산물 ----------.
③-④(생략)	③-④(제정안과 같음)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 내역을 군수와 고성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학교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고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의 장은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의 2(지도 · 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 사용 보고내역을 검토하여 식품비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고성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 · 수 · 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고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지역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 규정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 농·수·축산물"이라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3."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4."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 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는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방법,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고성교육청 학무과장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4. 고성군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단체 2인
6. 교사단체 2인
7. 농·수·축산인단체 3인
8.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9. 관련 전문가 1인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인

③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군수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5. 기타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지정판매업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매월 말 기준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군수는 지정판매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해태 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급식학교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매년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의 장은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 사용 보고 내역을 검토하여 식품비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고성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